

# 부천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6년 10월 2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6년 10월 2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131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(2006년 10월 12일)

상정 의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시민봉사과장 남상수)

### 제안이유

○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참여행정을 도모하고 관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민원모니터 제도를 10년간 운영한 결과에 따라 부진한 면을 보완하는 한편, 법 제도권 안에 두어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### 주요골자

○ 시정과 관련한 생활주변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하는 민원모니터는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희망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하거나, 동장 등의 추천을 받아 2년을 임기로 시장이 위

촉 하도록 함.(안 제4조 및 제5조)

- 민원모니터가 사망·질병, 다른 시·군으로의 이사,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6조)
- 민원모니터는 생활주변의 불편사항, 미담수범사례, 위법·부당한 행정 사례 및 제도개선사항 등을 제보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7조)
- 시장은 민원모니터의 원활한 제보활동을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하도록 함.(안 제8조)
- 민원모니터가 시책이나 추진사업에 대한 발전방안 또는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한 경우 그 내용의 효용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9조)
- 담당공무원은 제보자의 성명·주소·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노출 또는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함.(안 제10조)

### 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민원모니터 위촉인원을 조례에 규정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가?	○ 동별 1~2명 정도를 위촉할 계획임.
○ 시장에게 바란다, 경기도 모니터 요원, 통·반장 등 다양한 모니터 창구가 있는데 굳이 동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지?	○ 민원모니터에 대한 소속감, 책임감 부여를 통해 동 제도를 더욱 활성화 시키기 위함.
○ 5기 민원모니터 실적이 미흡한데 예산에 보상비를 편성해야 하는가?	○ 민원모니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최소한의 실비를 편성코자 함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없음

나. 반대토론

없음

5. 심사결과

수정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

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없음

# 부천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제35호
의결 년월일	2006. 10. 19 (제131회)

제안년월일 : 2006. 10. 12

제안자 : 행정복지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민원모니터 위촉인원을 거주지역별, 성별, 나이별, 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도록 막연하게 규정되어 너무 많은 인원이 모니터로 위촉될 수 있으므로 민원모니터 위촉인원을 제한하는 것으로 수정함.

## 2. 주요골자

- 민원모니터 위촉인원을 80인 이내로 제한.(안 제4조 2항)

# 부천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안 수정안

부천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 2항 “민원모니터 위촉인원은 거주지역별·성별·나이별 및 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”를 “민원모니터 위촉인원은 80인 이내로 하고, 거주지역별·성별·나이별 및 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”로 한다.

위의 수정부분 이외의 『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동일함.』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조 례 안	수 정 안
<p>제4조(위촉)①생략</p> <p>②<u>민원모니터 위촉인원은 거주지역별·성별·나이별 및 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.</u></p>	<p>제4조(위촉)①(조례안과 같음)</p> <p>②<u>민원모니터 위촉인원은 80인 이내로 하고, 거주지역별·성별·나이별 및 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.</u></p>

[수정안포함]

## 부천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시민참여행정을 도모하고자

민원모니터를 운영함으로써 관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,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민원모니터”라 함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시장의 위촉을 받아 시정과 관련된 생활주변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다른 법규와의 관계) 민원모니터의 제보 및 제보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위촉) ①민원모니터는 성별·나이·직업 등에 관계없이 희망자를 대상으로 동장 및 지역사회개발 또는 봉사를 목적으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가·허가·승인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.

②민원모니터의 위촉인원은 80인 이내로 하고, 거주지역별·성별·나이별 및 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.

제5조(위촉기간) 민원모니터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, 연임하여 위촉할 수 있다.

제6조(해촉) 시장은 민원모니터가 사망·질병 또는 다른 시·군으로의 이사,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제7조(제보대상) 민원모니터가 제보할 사항은 생활주변의 불편사항, 미담수범 사례, 위법·부당한 행정사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한다.

제8조(신분증) ①시장은 민원모니터의 원활한 제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.

②신분증에는 발급번호·성명·주소·주민등록번호 및 유효기간 등을 기재하고,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.

제9조(실비보상) 시의 시책이나 추진사업에 대한 발전방안 또는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한 실적이 있는 민원모니터에게는 그 내용의 효용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관련정보의 보호) 민원모니터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열거되지 아니한 모든 경우에 대하여 제보자의 성명·주소 및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노출또는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#### 1. 미담·수범사례 및 정책의 대안의 제보



2. 개인·단체·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의 제보

3. 기타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한  
경우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 
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